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国民健康保険法施行規則 [別紙第1号書式] <改正2024年5月28日>

被扶養者資格（取得・喪失）届

(略称：被扶養者届、略号：A222)



(앞쪽)

(表面)

[illegible]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6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사항을 신고합니다.

「国民健康保険法施行規則」第2条及び第61条の3に基づき、上記の通り被扶養者資格取得（喪失）事項を届け出ます。

년 월 일
年 月 日

신고인
届出人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国民健康保険公団理事長 殿

첨부서류 添付書類	1. 피부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 被扶養者の家族関係登録簿（住民登録票謄本で「国民健康保険法施行規則」第2条第1項各号の要件を満たすかどうか確認できない場合のみ提出）1部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障害者福祉法」第32条に基づき登録された障害者、「国家有功者等の礼遇及び支援に関する法律」第4条・第73条及び第74条に基づく国家有功者等（法律第11041号に改正される前の「国家有功者等の礼遇及び支援に関する法律」第73条の2による国家有功者等を含む）で、同法第6条の4による傷疾等級判定を受けた者又は「報勳補償対象者支援に関する法律」第2条に基づく報勳補償対象者で、同法第6条に基づく傷疾等級判定を受けた者であることを証明する書類 1部（該当事項がある場合のみ提出）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都市及び住居環境整備法」による住宅再建築事業の事業者登録証の写し等、別表1の2第2号に該当する事実を確認するために公団が要求する書類（被扶養者になろうとする者が別表1の2第2号による認定を受けようとする場合のみ提出）1部 4.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한 피부양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4. 被扶養者の資格を取得しようとする者、又は被扶養者の資格を喪失した被扶養者が在外国民もしくは外国人である場合は、以下の区分に基づく書類 가. 자격취득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イ. 資格取得の場合：以下の区分に基づく書類 1) 재외국민: 주민등록표 등본 1부. 1) 在外国民：住民登録票謄本1部 2) 외국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그 밖의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2) 外国人：「在外同胞の出入国と法的地位に関する法律」第2条第2号の外国国籍同胞の場合は、国内居所申告証の写し又は国内居所申告事実証明1部、その他の外国人の場合は外国人登録証の写し又は外国人登録事実証明1部。 나. 자격상실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ロ. 資格喪失の場合：被扶養者の資格喪失の事由を立証する書類1部 ※ 위 첨부서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통해 공단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上記の添付書類は、「国民健康保険法」第96条及び同法施行令第69条の2による資料提供の要請によって公団が確認できない場合に限り提出します。	수수료 없음 手数料なし
--------------	--	-----------------

작성방법
作成方法

- ①～③: 사업장 및 기관(학교)의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및 사업장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①～③: 事業場及び機関（学校）の事業場管理番号、名称及び事業場の電話番号を記入します。
- ④～⑥: 직장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④～⑥: 職場加入者の氏名、住民登録番号（外国人は外国人登録番号、「在外同胞の出入国と法的地位に関する法律」第2条第2号による外国国籍同胞は国内居所申告番号を記入）と電話番号を記入します。
- ⑦: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⑦: 加入者との関係を記入します。但し、被扶養者の資格を喪失した場合は記入しないでください。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며느리, 증조부모, 계자(繼子), 친생자녀, 친생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 손녀사위, 손자며느리 등

※ 配偶者、父母、祖父母、子女、孫・孫娘以下、兄弟姉妹、妻の父母、夫の父母、婿・嫁、曾祖父母、継子、嫡出子、実の父母、夫の祖父母、妻の祖父母、孫娘の夫、孫の妻など

⑧～⑩: 신고 대상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및 취득(상실) 연월일을 적습니다.

⑧～⑩: 申告対象の被扶養者の氏名、住民登録番号(外国人は外国人登録番号、「在外同胞の出入国と法的地位に関する法律」第2条第2号による外国国籍同胞は国内居所申告番号を記入)と取得(喪失)年月日を記入します。

⑪: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취득 또는 상실 사유의 부호를 적습니다.

⑪: 以下(※)の区分に基づき、該当する取得又は喪失事由のコードを記入してください。

※ 취득 사유<부호>: 출생<03>,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04>, 직장가입자 변경<05>, 피부양자 상실<06>, 지역가입자에서 변경<07>

※ 取得事由<コード>: 出生<03>、医療給付受給権者等から除外<04>、職場加入者変更<05>、被扶養者喪失<06>、地域加入者から変更<07>

※ 상실 사유<부호>: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거주불명 등록<14>, 국적 상실<17>, 외국인(재외국민)으로서 출국<18>, 이민출국<19>, 행방불명<21>, 기타<13>

※ 喪失事由<コード>: 死亡<02>、医療給付受給権者として確定<04>、有功者等の健康保険排除申請<10>、居住不明登録<14>、国籍喪失<17>、外国人(在外国民)の出国<18>、移民出国<19>、行方不明<21>、その他<13>

⑫: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6·18자유상이자를 포함합니다)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장애 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의 부호와 그 등록일을 적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⑫: 障害者又は国家有功者(6・18自由傷痍者を含む)の場合は、以下(※)の区分に基づき、該当する障害の種類及び国家有功者等のコードとその登録日を記入してください。但し、被扶養者の資格を喪失した場合は記入しないでください。

※ 장애 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부호>: 지체장애인<01>, 뇌병변장애인<02>, 시각장애인<03>, 청각장애인<04>, 언어장애인<05>, 지적장애인<06>, 자폐성장애인<07>, 정신장애인<08>, 신장장애인<09>, 심장장애인<10>, 호흡기장애인<11>, 간장애인<12>, 안면장애인<13>, 장루·요루장애인<14>, 뇌전증장애인<15>, 국가유공자 등<19>

※ 障害の種類及び国家有功者等<コード>: 肢体障害者<01>、脳病変障害者<02>、視覚障害者<03>、聴覚障害者<04>、言語障害者<05>、知的障害者<06>、自閉性障害者<07>、精神障害者<08>、腎臓障害者<09>、心臓障害者<10>、呼吸器障害者<11>、肝臓障害者<12>、顔面障害者<13>、人工肛門・人工膀胱障害者<14>、てんかん障害者<15>、国家有功者など<19>

⑬: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⑬: 外国人の場合は、国籍、在留資格(外国人登録証に記載の内容)、在留期間(外国人登録証の発給日から出国予定日まで)を記入します。

유의사항
留意事項

- ※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 健康保険証は、加入者又は被扶養者が申請する場合に発給されます。近くの支社を訪問、もしくは顧客センター（☎1577-1000）、ホームページ（www.nhis.or.kr）、モバイルアプリ等で申請できます。

처리 절차
処理の流れ

